|  |  |  |
| --- | --- | --- |
|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관리방법**(2006년 7월 26일 노동보장부령 제27호로 공표되었고; 2015년 4월 30일 <일부 규장 개정에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되었음.)**제1장 총칙****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교육조례>(이하 '<중외합작교육조례>'로 약칭)를 실시하고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중국 교육기구와 외국 교육기구(이하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로 약칭, 직업기능 교육훈련기구도 교육기구에 포함됨)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 및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설립, 활동 및 그에 대한 관리는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이 방법에서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라 함은,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가 <중외합작교육조례>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 경내에서 공동으로 설립하는 중국 공민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하여 직업기능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공익성 교육기구를 지칭한다.이 방법에서 중외합작 직업기능 교육훈련 프로젝트라 함은,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가 <중외합작교육조례>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신규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설립 없이 기존 중국 교육기구와 협력하여 중국 공민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한 전공(직업, 직종), 과정(課程)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는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지칭한다.**제3조** 국가는 경제발전과 노동력 시장의 기능형 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특성에 근거하여 외국의 선진기술, 선진교육방법이 반영된 고품질 직업기능교육 자원을 도입하는 것을 격려한다.국가는 국내 신흥 및 수요가 긴급한 고기능성 직업영역에서 중외합작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격려한다.**제4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사립학교 지원 및 장려 정책을 적용 받는다.노동보장행정부서는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사회조직과 개인을 장려하고 표창한다.**제5조** 국무원 노동행정보장부서는 전국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업무의 통합기획, 종합조율 및 거시적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노동보장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제2장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설립****제6조**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는 <중외합작교육조례>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자로 필요한 교육 자격과 양호한 교육 품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7조**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는 평등한 협상을 거쳐 합작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합작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1) 각 합작 당사자의 명칭, 주소와 법인대표의 성명, 직무, 국적;(2) 설립하고자 하는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명칭, 주소, 교육목표, 설립취지, 합작내용과 합작기한;(3) 각 합작 당사자가 투입하는 자산의 액수, 방식과 자금납부기한;(4) 각 합작 당사자간의 분쟁 해결 방식과 절차;(5) 합작계약 위반 책임;(6) 합작 당사자들이 약정한 기타 사항.합작계약서는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외국어 버전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이 중국어 버전과 일치해야 한다.**제8조**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가 투입하는 교육운영자금은 설립하고자 하는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레벨 및 규모와 어울려야 한다.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는 합작계약서에 약정한 기한 내에 교육운영자금을 전액 투입해야 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가 존속하는 기간내에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는 교육운영자금을 포탈하거나 교육운영경비를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가 투입한 현물, 토지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재산의 가치평가는 중외합작교육 협력 쌍방이 공평성,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협상하여 확정하거나 쌍방이 인정하는 사회중개조직에 의뢰하여 법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중국 교육기구가 국유자산을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에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의 국유자산 감독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자격을 구비한 사회중개조직에 의뢰하여 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근거로 국유자산의 액수를 확정하고 해당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관리 직책이 있는 기구에 비안(備案)해야 하며 법에 따라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제10조**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외국정부부서와 체결한 협의서 또는 중국 교육기구의 요구에 따라 외국 교육기구를 초청하여 중국 교육기구와 교육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초청을 받은 외국 교육기구는 세계적으로 또는 그 소속국에서 일정한 영향력이 잇는 교육기구이어야 한다.**제11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설립은 설립 예정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심사비준한다.**제12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설립은 설립준비 단계와 정식설립 단계 두 절차로 구분한다. 교육 조건을 구비하였고 설치기준에 도달한 경우 설립준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식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제13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설립준비는 중국 교육기구가 신청해야 하며 <중외합작교육조례>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 중 신청보고서는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중외합작교육조례>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정한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 신청표>에 규정한 내용과 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설립준비를 신청하는 경우 <중외합작교육조례>의 관련 조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의 등록등기증명, 법인대표의 유효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 중 외국측 협력 파트너의 관련 증명서류는 소속국 공증기관의 증명절차를 거쳐야 한다.**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설립준비를 비준하지 아니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1)사회공공이익, 역사·문화전통과 직업교육의 공익성에 위배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의 직업교육 사업의 발전 수요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2)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 중의 일방 당사자가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3) 신청서류가 <중외합작교육조례>와 이 방법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4) 신청서류에 조작된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5)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비준 불허의 경우.**제15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정식설립은 중국 교육기구가 신청해야 하며 <중외합작교육조례>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 중 설립준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식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제정한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 신청표>에 규정한 내용과 격식에 따라 신청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방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제16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를 정식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중외합작교육조례> 제11조 규정한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 설립 시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도달해야 한다.(1) 동시 교육 인원수가 200명 이상인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2) 교육장소가 환경보호, 노동보호, 안전, 소방, 위생 등 관련 규정과 관련 직업(직종) 안전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건축면적이 교육규모와 어울려야 하되 보통 3,0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학습장소, 실험장소는 보통 1,000평방미터 이상어야 한다. 임차 시설의 임차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3) 실습·실험 시설과 설비가 교육과 기능훈련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충족한 실습용 일자리가 있어야 하며 주요 설비가 세계 선진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5,000권 이상의 도서자료와 필요한 열람장소가 있어야 하며 전자 열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4) 투입한 교육자금이 교육 레벨과 규모에 어울려야 하며 안정적인 경비 공급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5)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 중국 경내에서 거주하고 조국을 사랑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학 본과 이상의 학력 또는 고급 기술직 임직자격, 고급 이상의 국가직업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6) 전직·겸직 교사팀이 전공 설치, 교학규모와 어울려야 하며 전직 교사가 전체 교직자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각 클래스마다 전공 별로 전문 이론과목 교사와 생산실습 지도교사를 배정해야 하며 그 중 이론과목 교사는 그의 교직과 어울리는 교직자격 조건을 구비해야 하고 실습 지도교사는 고급 이상의 직업자격 또는 중급 이상의 관련 전문기술직 임직 자격을 갖춤과 더불어 해당 교직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단, 채용한 외국 국적의 전직·겸직 교사와 외국 국적의 관리인력은 <중외합작교육조례> 제27조에 규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중외합작 기능공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기능공학교 설치기준에 따라 집행한다.**제17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중외합작교육조례>의 규정에 에 따라 기구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구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1)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명칭, 주소;(2) 교육취지, 규모, 레벨, 유형 등;(3) 자산의 액수, 출처, 성격 및 재무제도;(4)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가 합리적인 수익 요구 여부;(5) 이사회 또는 동사회의 구성방법, 인력 구성, 권한, 임기, 의사규칙 등;(6) 법인대표의 임명과 해임 절차;(7) 민주 관리 및 감독의 형식;(8) 기구 종료사유, 절차 및 청산방법;(9) 정관 개정절차;(10) 정관에 규정해야 하는 기타 사항.**제18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단 하나의 명칭만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외국어 명칭은 중국어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명칭은 그가 소재한 행정구획, 상호, 직업기능교육학교의 순서대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명칭의 앞에 '중국', '전국', '중화' 등 단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국가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가해서도 아니 된다. **제19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지사를 설립하거나 기타 중외합작 교육기구를 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0조** 심사비준기관은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 정식설립 신청을 접수한 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의를 실시해야 하며 전문가위원회가 자문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전문가위원회는 단계별 유형별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평가하며 이에 필요한 시간은 심사비준기관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되 심사비준 기한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심사비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업무인력을 파견하여 신청이 제출한 신청서류의 주요 내용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정식설립을 불허하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1) 교육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설치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2) 이사회, 동사회의 구성원 및 그 구성이 법정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 교사, 재무인력이 법정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시정요구를 통보받은 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3) 정관이 <중외합작교육조례>와 이 방법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시정요구를 통보받은 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4) 설립준비 단계에서 법률·법규 위반 행위를 행한 경우.설립준비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설립을 신청한 경우 전 항의 제(1), (2), (3)호는 물론 이 방법 제14조에 규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심사비준기관은 비준을 불허한다.**제22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정식설립을 비준하는 경우 해당 심사기관이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가 통일적으로 인쇄제작하고 국무원 교육행정부서가 통일적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중외합작교육 허가증을 발급한다.**제23조** 중외합작교육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즉시 신문지에 분실공고를 게재함과 더불어 분실공고를 소지하여 심사비준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비준기관이 허가 절차를 거쳐 재발급한다.**제3장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운영****제24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1)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는 법인 자격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2) 프로젝트의 교육 레벨과 유형이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의 교육 레벨 및 유형과 어울려야 한다;(3) 중국 교육기구는 개설하고자 하는 전공(직업, 직종) 교육의 교사 자원, 설비, 시설 등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제25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는 합작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합작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1) 각 합작 당사자의 명칭, 주소와 법인대표의 성명, 직무, 국적;(2) 합작 프로젝트의 명칭, 합작내용과 합작기한;(3) 각 합작 당사자가 투입하는 자산의 액수, 방식 및 자금 납부기한(현물, 자금의 투입이 있는 경우);(4) 합작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 방식과 절차;(5) 합작계약 위반 책임;(6) 합작 당사자들이 약정한 기타 사항.합작계약서는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외국어 버전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이 중국어 버전과 일치해야 한다.**제26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 운영 신청은 프로젝트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심사비준한 후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에 보고 및 비안(備案)한다.**제27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교육기구가 신청을 제출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 신청표>;(2) 합작계약서;(3) 공증을 거친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의 법인자격증명;(4) 자산기부계약서 및 관련 증명(기부가 있는 경우).**제28조**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비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비준하지 아니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1) 사회공공이익, 역사문화전통과 직업교육의 공익성격에 위배되고 국가 또는 지방의 직업교육 사업의 발전 수요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2)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 중의 일방 당사자가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3) 이 방법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4) 신청서류에 조작된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5)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비준 불허의 경우.**제29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비준하는 경우 심사비준기관이 통일적인 양식과 통일적인 고유번호의 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 비준증서를 발급한다.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 비준증서는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양식을 제정하고 통일적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제4장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조직 및 활동****제30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학적과 교학 관리, 교사 관리, 학생 관리, 위생안전 관리, 설비 관리, 재무자산 관리 등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제31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중외합작교육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동사회를 설치해야 한다. 국가기관 공직자는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이사회 또는 동사회 구성원 직무를 맡아서는 아니 된다.**제32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전문직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를 임용해야 한다.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는 법에 따라 교육·교학과 행정관리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대학 본과 및 그 이상 학력과 일정한 외국어 소통 능력을 구비함과 더불어 중급 및 그 이상의 관련 전공 기술직무 담당자격을 구비한 전문직 교육관리인원이 있어야 한다.**제33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는 해당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중국 교육기구가 취급하는 교육 활동의 구성 부분으로서 해당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중국 교육기구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는 교육 취지, 교육 목표와 비준을 받은 전공(직업, 직종) 설치 범위에 따라 자주적으로 전공(직업, 직종)을 설치하고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단, <중외합작교육조례>에 의해 금지된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는 중국 경내에서 직업기능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중국 경외에서도 부분적인 직업기능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제35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학생 모집 범위, 기준과 방법을 확정한다. 단, 기능공학교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제36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는 학생 모집 요강 또는 교육대상자와 체결한 교육계약서에 따라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직업기능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는 개설한 전공(직업, 직종)과 어울리는 교육시설, 설비와 기타 필요한 교육조건을 제공해야 한다.**제37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증서 또는 수료증서를 발급한다. 직업기능교육을 받은 학생이 정부가 비준한 직업기능평가기구가 실시한 검정평가를 통과한 경우 중국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직업자격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제38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법에 따라 본 기구의 자산을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다. 단, 공익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 교사(校舍) 등 자산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9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중국 교육기구는 법에 따라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재무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며 학교의 재무 계정에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 특정항목을 설치하고 수입과 지출 업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한다.**제40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는 영리성 경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1조**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가 합리적인 수익을 요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사립교육 촉진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사립교육 촉진법 실시조례>의 제47조에 열거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는 수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사립교육 촉진법 실시조례>의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을 적립 및 사용한다.**제42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비용 종목과 기준은 국가의 정부 가격 책정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하고 공포한다.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교육 잉여금은 프로젝트의 교육 활동과 교육 조건 개선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제4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는 종료된다.(1) 합작계약서의 요구에 따라 종료하며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득한 경우;(2)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 중 일방 당사자가 법에 따라 교육자격을 취소 당한 경우(3) 중외합작 교육 프로젝트 비준증서를 취소 당한 경우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경우 재학생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중국 교육기구는 프로젝트 종료 신청 제출 시 재학생들을 적절하게 배치할데 관한 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중국 교육기구는 중외합작 교육프로젝트 비준증서를 심사비준기관에 반납해야 하며 심사비준기관은 법에 따라 말소하고 사회에 공포한다.**제5장 관리 및 감독****제44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중개조직에 의뢰하여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 및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교육 수준과 교육 품질에 대한 종합평가와 특정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제45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중국 교육기구는 매년 3월31일 이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연도교육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도교육보고서에는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학생 모집, 교육전공(직업, 직종), 교육 기간, 교사 배치, 교육 품질, 증서 발급, 재무 상황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제46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국가의 통일적인 회계제도에 따라 회계정산을 실시하고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계연도 종결 후 1개월 이내에 동 연도재무회계보고서에 대한 사회회계감사기구의 감사 결과를 사회에 공포하고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해야 한다.**제47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는 전공(직업,직종) 설치와 어울리는 교육 계획, 요강 및 교재가 있어야 한다. 스스로 편성하였거나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교육 계획, 요강 및 교재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해야 한다.**제48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학생 모집 요강 및 광고 샘플은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해야 한다. 학생 모집 요강 및 광고는 법에 따라 기구와 프로젝트의 명칭, 교육 목표, 교육 레벨, 주요 과정, 교육 조건, 교육 기간, 비용 종목, 비용 기준, 증서 발급과 취업 방향 등을 사실대로 발표해야 한다.**제6장 법률책임****제47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 심사비준기관 및 그 업무인력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수취하거나 기타 이익을 취득하고 직권 남용 또는 직무 태만으로 이 방법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자에게 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 비준증서를 발급한 경우 직접 담당 주관자 및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제50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초월하여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비준한 경우 그 비준문서는 무효하며 직접 담당 주관자 및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공공재산,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제51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가 이 방법상의 조직 및 활동 관련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해 관리상의 혼란, 교육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여 악영향을 미친 경우 <중외합작교육조례>의 제56조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제52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 없이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거나 부정당한 수단으로 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 비준증서를 사취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해당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중국 교육기구에 기한부 시정 및 학생들로부터 수취한 비용의 반환을 명하고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제53조** 비준을 득하지 아니하고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운영 중에 비용 종목을 추가하거나 비용 기준을 상향조정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해당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중국 교육기구에 기준을 초과하여 수취한 비용의 반환을 명함과 더불어 가격주관부서에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제청한다.**제45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운영 중에 조작된 학생 모집 요강 또는 광고를 발포하여 금전·재물을 사취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가 해당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중국 교육기구에 수취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명하며 잔여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더불어 불법소득의 3배 이하, 총금액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제55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 운영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할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해당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중국 교육기구에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1) 프로젝트를 운영함에 있어 심사비준 범위, 레벨을 초과한 경우;(2) 관리가 혼란스럽고 교육, 교학 품질이 낮은 경우; (3)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무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4) 규정을 위반하고 교육 잉여금을 경우.**제7장 부칙****제56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타이완 지역의 교육기구가 중국본토 교육기구와 합작하여 직업기능교육기구를 설립하거나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경우 국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67조**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등록한 경영성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규정대로 집행한다.**제68조** 외국 교육기구,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은 단독으로 중국 경내에서 중국 공민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하는 직업기능교육기구를 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9조** 이 방법 실시 이전에 이미 비준을 받아 운영중에 있는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경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 비준증서를 보충 발급 받아야 한다. 그 중 이 방법에 규정한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이 방법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방법에 규정한 조건에 도달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어도 이 방법에 규정한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 비준증서를 보충 발급하지 않는다.**제60조** 이 방법은 2006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管理办法** （2006年7月26日劳动保障部令第27号公布； 根据2015年4月30日《人力资源社会保障部关于修改部分规章的决定》修订） **第一章　总 则****第一条**　为实施《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办学条例》（以下简称《中外合作办学条例》），规范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活动，制定本办法。**第二条**　中国教育机构同外国教育机构（以下简称中外合作办学者，教育机构含职业技能培训机构）合作举办职业技能培训机构和办学项目的设立、活动及管理，适用本办法。本办法所称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是指中外合作办学者依照《中外合作办学条例》和本办法的规定，在中国境内合作举办的以中国公民为主要招生对象，实施职业技能培训的公益性办学机构。本办法所称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是指中外合作办学者依照《中外合作办学条例》和本办法的规定，不设立新的职业技能培训机构，而是通过与现有中国教育机构合作设置以中国公民为主要招生对象的专业（职业、工种）、课程的方式开展的职业技能培训项目。**第三条**　国家鼓励根据经济发展和劳动力市场对技能劳动者的需求及特点，引进体现国外先进技术、先进培训方法的优质职业技能培训资源。国家鼓励在国内新兴和急需的技能含量高的职业领域开展中外合作办学。**第四条**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根据法律法规的规定，享受国家给予民办学校的扶持与奖励政策。劳动保障行政部门对发展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做出突出贡献的社会组织和个人给予奖励和表彰。**第五条**　国务院劳动保障行政部门负责全国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工作的统筹规划、综合协调和宏观管理。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劳动保障行政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管理工作。**第二章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的设立****第六条**　中外合作办学者应当符合《中外合作办学条例》规定的条件，具备相应的办学资格和较高的办学质量。**第七条**　中外合作办学者应当在平等协商的基础上签订合作协议。合作协议应当载明下列内容：（一）合作各方的名称、住所和法定代表人的姓名、职务、国籍；（二）拟设立的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的名称、住所、培养目标、办学宗旨、合作内容和期限；（三）合作各方投入资产数额、方式及资金缴纳期限；（四）解决合作各方争议的方式和程序；（五）违反合作协议的责任；（六）合作各方约定的其他事项。合作协议应当为中文文本。有外文文本的，应当与中文文本的内容一致。**第八条**　中外合作办学者投入的办学资金，应当与拟设立的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的层次和规模相适应。中外合作办学者应当按照合作协议按时、足额投入办学资金。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存续期间，中外合作办学者不得抽逃办学资金，不得挪用办学经费。**第九条**　中外合作办学者为办学投入的实物、土地使用权、知识产权以及其他财产，其作价由中外合作办学者双方按照公平合理的原则协商确定，或者聘请双方同意的社会中介组织依法进行评估，并依法办理财产权转移有关手续。中国教育机构以国有资产作为办学投入的，应当根据国家有关国有资产监督管理规定，聘请具有评估资格的社会中介组织依法进行评估，根据评估结果合理确定国有资产的数额，并报对该国有资产负有监管职责的机构备案，依法履行国有资产管理义务。**第十条**　根据与外国政府部门签订的协议或者应中国教育机构的请求，国务院劳动保障行政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邀请外国教育机构与中国教育机构合作办学。被邀请的外国教育机构应当是国际上或者所在国具有一定影响力的教育机构。**第十一条**　设立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由拟设立机构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劳动保障行政部门审批。**第十二条**　设立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分为筹备设立和正式设立两个步骤。具备办学条件，达到设置标准的，可以直接申请正式设立。**第十三条**　申请筹备设立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应当由中国教育机构提出申请，提交《中外合作办学条例》规定的文件。其中申办报告应当按照国务院劳动保障行政部门根据《中外合作办学条例》第十四条第（一）项制定的《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申请表》所规定的内容和格式填写。申请筹备设立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还应根据《中外合作办学条例》有关条款的规定，提交中外合作办学者的注册登记证明、法定代表人的有效证明文件，其中外国合作办学者的有关证明文件应当经所在国公证机关证明。**第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审批机关不予批准筹备设立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并书面说明理由：（一）违背社会公共利益、历史文化传统和职业培训的公益性质，不符合国家或者地方职业培训事业发展需要的；（二）中外合作办学者有一方不符合条件的；（三）申请文件不符合《中外合作办学条例》和本办法要求，经告知仍不改正的；（四）申请文件有虚假内容的；（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不予批准情形。**第十五条**　申请正式设立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应当由中国教育机构申请，提交《中外合作办学条例》规定的文件。其中直接申请正式设立的，正式设立申请书应当按照国务院劳动保障行政部门制定的《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申请表》所规定的内容和格式填写，并提交本办法第十三条第二款规定的资格证明。**第十六条**　正式设立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应当具备《中外合作办学条例》第十一条规定的条件。设立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应达到以下设置标准：（一）具有同时培训不少于200人的办学规模；（二）办学场所应符合环境保护、劳动保护、安全、消防、卫生等有关规定及相关职业（工种）安全规程。建筑面积应与其办学规模相适应，一般不少于3000平方米，其中实习、实验场所一般不少于1000平方米。租用的场所其租赁期限不少于3年；（三）实习、实验设施和设备应满足教学和技能训练需要，有充足的实习工位，主要设备应达到国际先进水平。具有不少于5000册的图书资料和必要的阅览场所，并配备电子阅览设备；（四）投入的办学资金，应当与办学层次和规模相适应，并具有稳定的经费来源；（五）校长或主要行政负责人应具有中华人民共和国国籍，在中国境内定居，热爱祖国、品行良好，具备大学本科及以上学历或者高级专业技术职务任职资格、高级以上国家职业资格；（六）专兼职教师队伍与专业设置、办学规模相适应，专职教师人数一般不少于教师人数的1/3。每个教学班按专业应当分别配备专业理论课教师和生产实习指导教师，其中理论教师应具有与其教学岗位相适应的教师上岗资格条件，实习指导教师应具备高级及以上职业资格或中级及以上相关专业技术职务任职资格，并具有相应的教师上岗资格。但是，聘任的专兼职外籍教师和外籍管理人员，应当具备《中外合作办学条例》第二十七条规定的条件。设立中外合作技工学校，参照技工学校设置标准执行。**第十七条**　设立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应当按照《中外合作办学条例》的规定制定机构章程，载明下列事项：（一）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的名称、住所；（二）办学宗旨、规模、层次、类别等；（三）资产数额、来源、性质以及财务制度；（四）中外合作办学者是否要求取得合理回报；（五）理事会或者董事会的产生方法、人员构成、权限、任期、议事规则等；（六）法定代表人的产生和罢免程序；（七）民主管理和监督的形式；（八）机构终止事由、程序和清算办法；（九）章程修改程序；（十）其他需要由章程规定的事项。**第十八条**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只能使用一个名称，其外文译名应当与中文名称相符。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名称应当按所在行政区划、字号、职业技能培训学校依次确切表示。名称中不得冠以“中国”、“全国”、“中华”等字样，不得违反国家规定，不得损害社会公共利益。**第十九条**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不得设立分支机构，不得举办其他中外合作办学机构。**第二十条**　审批机关受理正式设立中外合作技工学校的，应当组织专家委员会评议，由专家委员会提出咨询意见。专家委员会对申请人申请材料按照分期分类的原则进行评审，所需时间由审批机关书面告知申请人，不计算在审批期限内。审批机关认为必要时应当指派2名以上工作人员，对申请人提交的申请材料主要内容进行核查。**第二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审批机关不予批准正式设立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并书面说明理由：（一）不具备办学条件、未达到设置标准的；（二）理事会、董事会的组成人员及其构成不符合法定要求，校长或者主要行政负责人、教师、财会人员不具备法定资格，经告知仍不改正的；（三）章程不符合《中外合作办学条例》和本办法要求，经告知仍不修改的；（四）在筹备设立期内有违反法律、法规行为的。直接申请正式设立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的，除前款规定的第（一）、（二）、（三）项外，有本办法第十四条规定情形之一的，审批机关不予批准。**第二十二条**　批准正式设立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的，由该审批机关颁发国务院劳动保障行政部门统一印制、国务院教育行政部门统一编号的中外合作办学许可证。**第二十三条**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遗失中外合作办学许可证的，应立即登报声明，并持声明向审批机关提交补办申请，由审批机关核准后补发。**第三章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的举办****第二十四条**　举办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应当具备下列条件：（一）中外合作办学者应当具有法人资格；（二）项目的办学层次和类别与中外合作办学者的办学层次和类别相适应；（三）中国教育机构应当具备举办所开设专业（职业、工种）培训的师资、设备、设施等条件。**第二十五条**　举办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中外合作办学者应当签订合作协议，载明下列内容：（一）合作各方的名称、住所和法定代表人的姓名、职务、国籍；（二）合作项目名称、合作内容和期限；（三）合作各方投入资产数额、方式及资金缴纳期限（有资产、资金投入的）；（四）解决合作各方争议的方式和程序；（五）违反合作协议的责任；（六）合作各方约定的其他事项。合作协议应当为中文文本。有外文文本的，应当与中文文本的内容一致。**第二十六条**　申请举办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由拟举办项目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劳动保障行政部门审批，并报国务院劳动保障行政部门备案。**第二十七条**　举办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应当由中国教育机构提出申请，提交下列文件：（一）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申请表》；（二）合作协议；（三）经公证的中外合作办学者法人资格证明；（四）捐赠资产协议及相关证明（有捐赠的）。**第二十八条**　审批机关受理申请后应当在30个工作日内作出是否批准举办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的决定。有下列情形之一的，审批机关不予批准举办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并书面说明理由：（一）违背社会公共利益、历史文化传统和职业培训的公益性质，不符合国家或者地方职业培训事业发展需要的；（二）中外合作办学者有一方不符合条件的；（三）申请文件不符合本办法要求，经告知仍不改正的；（四）申请文件有虚假内容的；（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不予批准情形。**第二十九条**　批准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的，由审批机关颁发统一格式、统一编号的中外合作办学项目批准书。中外合作办学项目批准书由国务院劳动保障行政部门制定式样并统一编号。**第四章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的组织与活动****第三十条**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应当建立学籍和教学管理、教师管理、学生管理、卫生安全管理、设备管理、财务资产管理等项制度。**第三十一条**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应当依照《中外合作办学条例》的规定设立理事会、董事会。国家机关工作人员不得担任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的理事会或者董事会成员。**第三十二条**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应当聘任专职校长或者主要行政负责人。校长或者主要行政负责人依法独立行使教育教学和行政管理职权。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应当配备具有大学本科及以上学历及一定的外语交流能力，并具有中级及以上相关专业技术职务任职资格的专职教学管理人员。**第三十三条**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是举办该项目的中国教育机构教育教学活动的组成部分，应当接受举办该项目的中国教育机构的管理。**第三十四条**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和办学项目按照办学宗旨、培养目标和批准的专业（职业、工种）设置范围，自行设置专业（职业、工种），开展教育培训活动，但不得开展《中外合作办学条例》禁止的办学活动。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和办学项目可以在中国境内实施职业技能培训活动，也可以在中国境外实施部分职业技能培训活动。**第三十五条**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和办学项目依法自主确定招生范围、标准和方式。但实施技工学校教育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第三十六条**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和办学项目应当按照招生简章或者与受培训者签订的培训协议，开设相应课程，开展职业技能培训，保证培训质量。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和办学项目应当提供与所设专业（职业、工种）相匹配的教育教学设施、设备和其他必要的办学条件。**第三十七条**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和办学项目按照国家有关规定颁发培训证书或者结业证书。接受职业技能培训的学生，经政府批准的职业技能鉴定机构鉴定合格，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获得相应的国家职业资格证书。**第三十八条**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依法自主管理和使用本机构的资产，但不得改变按照公益事业获得的土地、校舍等资产的用途。**第三十九条**　举办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的中国教育机构应当依法对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的财务进行管理，并在学校财务账户内设立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专项，统一办理收支业务。**第四十条**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和办学项目不得从事营利性经营活动。**第四十一条**　中外合作办学者要求取得合理回报的，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实施条例》的规定执行。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有《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实施条例》第四十七条列举情形之一的，中外合作办学者不得取得回报。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实施条例》第三十七条的规定提取、使用发展基金。**第四十二条**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的收费项目和标准，按照国家有关政府定价的规定确定并公布。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的办学结余，应当继续用于项目的教育教学活动和改善办学条件。**第四十三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终止：（一）根据合作协议要求终止，并经审批机关批准的；（二）中外合作办学者有一方被依法吊销办学资格的；（三）被吊销中外合作办学项目批准书的。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终止，应当妥善安置在校学生；举办该项目的中国教育机构提出项目终止申请时，应当同时提交妥善安置在校学生的方案。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终止的，举办该项目的中国教育机构应当将中外合作办学项目批准书交回审批机关，由审批机关依法注销并向社会公布。**第五章　管理与监督****第四十四条**　劳动保障行政部门应当加强对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和办学项目的监督，组织或委托社会中介组织对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和办学项目的办学水平和教育培训质量，进行定期综合性评估和专项评估，并将评估结果向社会公布。**第四十五条**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和举办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的中国教育机构应当于每年3月31日前向审批机关提交年度办学报告，内容应当包括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和办学项目招收学生、培训专业（职业、工种）、培训期限、师资配备、教学质量、证书发放、财务状况等基本情况。**第四十六条**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和国家统一的会计制度进行会计核算，编制财务会计报告，于会计年度结束之日起1个月内向社会公布社会审计机构对其年度财务会计报告的审计结果，并报审批机关备案。**第四十七条**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和办学项目应当具有与专业（职业、工种）设置相对应的教学计划、大纲和教材。自编和从境外引进教学计划、大纲和教材应当符合法律法规规定，并报审批机关备案。**第四十八条**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和办学项目的招生简章和广告样本应当自发布之日起5日内报审批机关备案。招生简章和广告应当依法如实发布机构和项目的名称、培训目标、培训层次、主要课程、培训条件、培训期限、收费项目、收费标准、证书发放和就业去向等。**第六章　法律责任****第四十九条**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审批机关及其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收取他人财物或者获取其他利益，滥用职权、玩忽职守，对不符合本办法规定条件者颁发中外合作办学项目批准书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第五十条**　违反本办法的规定，超越职权审批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的，其批准文件无效，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致使公共财产、国家和人民利益遭受重大损失，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第五十一条**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违反本办法有关组织与活动的规定，导致管理混乱、教育教学质量低下，造成恶劣影响的，按照《中外合作办学条例》第五十六条规定追究法律责任。**第五十二条**　违反本办法的规定，未经批准擅自举办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或者以不正当手段骗取中外合作办学项目批准书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责令举办该项目的中国教育机构限期改正、退还向学生收取的费用，并处以1万元以下罚款。**第五十三条**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未经批准增加收费项目或者提高收费标准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责令举办该项目的中国教育机构退还多收的费用，并提请价格主管部门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第五十四条**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发布虚假招生简章或者招生广告，骗取钱财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责令举办该项目的中国教育机构退还收取的费用后，没收剩余违法所得，并处以违法所得3倍以下且总额3万元以下的罚款。**第五十五条**　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有下列情形之一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责令举办该项目的中国教育机构限期改正：（一）超出审批范围、层次办学的；（二）管理混乱，教育教学质量低下的；（三）未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财务管理的；（四）违反规定对办学结余进行分配的。**第七章　附　则****第五十六条**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的教育机构与内地教育机构合作举办职业技能培训机构或者办学项目的，参照本办法执行，国家另有规定的除外。**第五十七条**　在工商行政管理部门登记注册的经营性的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机构的管理办法，按照国务院规定执行。**第五十八条**　外国教育机构、其他组织或者个人不得在中国境内单独设立以中国公民为主要招生对象的职业技能培训机构。**第五十九条**　本办法实施前已经批准举办的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应当补办本办法规定的中外合作办学项目批准书。其中，不完全具备本办法规定的中外合作职业技能培训办学项目举办条件的，应当在本办法施行之日起1年内达到本办法规定的条件。逾期未达到本办法规定条件的，审批机关不予补办中外合作办学项目批准书。**第六十条**　本办法自2006年10月1日起施行。 |